

제2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(2021.3.8.)

조례안, 일반의안 검토보고서



의회운영위원회

[전문위원 진 학 성]

목 차

1	거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	1
2	2021년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	9

『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
일부개정(안)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21. 2. 23.
- 나. 발 의 자 : 심재수외 10인
- 다. 회부일자 : 2021. 3. 3.

2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검사위원 결원 발생 시 대처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결산검사의 차질없는 수행을 도모코자 함
- 나. 재무·회계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위해 검사위원 수당 증액 필요

3.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결원발생 시 선임방법 신설(안 제3조제6항)
- 나. 결산검사위원 수당 증액(별표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, 지방자치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결산검사위원 일비 증액분 예산 반영 필요

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재무과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1. 2. 25. ~ 2021. 3. 2.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5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3항
- 「 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 제83조 제1항
- 「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검사위원 결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므로,
 - 『지방자치법』 시행령 제83조제1항 : 법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이상 10명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이상 5명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로 대처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결산검사의 차질없는 수행을 도모하고 있고,

- 결산검사위원의 위원수당 증액은 재무·회계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.

-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관 련 법 규

거창군의회 규칙 제 호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(지급기준) 여비는 「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1일당 15만원을 지급한다.

별표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~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검사위원의 선임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u></p>
<p><u>제13조(지급기준) 여비는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1일당 10만원을 지급한다.</u></p>	<p><u>제13조(지급기준) 여비는 「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1일당 15만원을 지급한다.</u></p>

~~[별표] <삭 제>~~

~~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 지급 구분(제13조 관련)~~

구 분	액 수
일 바	100,000원
여 비	국내여비규정 “별표 2” 여비 지급표 상의 부군수 상당액

○ 지방자치법

제134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○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

제7조(여비지급 기준) 여비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.

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(제33조제1항제2호 관련)

1. 국내 여비

구분	준용
시·도의회 의원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2 제1호
시·군·자치구의회 의원	

비고

1. 의회의 회의(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) 당일 출·퇴근이 곤란한 원격지(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)나 도서지역(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)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·숙박비 및 식비(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)를 지급할 수 있다.
2.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·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.

2. 국외 항공운임

구분	준용
시·도의회 의원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
시·군·자치구의회 의장·부의장	
의장·부의장을 제외한 시·군·자치구의회 의원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

3. 국외 여비

구분	준용
시·도의회 의장·부의장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4 제3호
의장·부의장을 제외한 시·도의회 의원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4 제4호
시·군·자치구의회 의장·부의장	
의장·부의장을 제외한 시·군·자치구의회 의원	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4 제5호

비고: 준비금의 지급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제23조를 준용한다.

2021년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[검토 보고 서]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1. 3. 2.

다. 회부일자 : 2021. 3. 3.

2.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

연구단체명	회 장 (회원수)	활 동 계 획					사업비 (천원)
		계	토론회	현장 견학	정책특강	간담회	
2개		10회	-	2회	3회	5회	5,890
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회	이흥희 (10명)	5회	-	1회	°그린뉴딜정책 등 제도개선예 관한 사항	3회	2,560
청년정책연구 회	권순모 (9명)	5회	-	1회	°국내 사회혁신 을 위한 청년의 역할 °청년정책 개선방향 특강	2회	3,330

3. 심의근거 : 『거창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규칙』

4. 주요 심의사항

- 의원연구단체 등록(적격여부)에 관한사항
- 연구주제의 조정과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
- 연구활동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
- 정책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
- 그 밖의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5. 검토의견

- 의원 연구단체는 「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」에 따라 군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,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.
- 연구단체는 「지속가능발전정책연구회」와 「청년정책연구회」로서, 「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」 제3조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구성 인원(7명이상)과 의원 1명당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도 준수하고 있으며 2021년도 추진내용으로는 연구용역, 정책특강 3회, 간담회 5회, 현장견학 2회를 계획하고 있음.

○ 2021년도 예산내역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			비 고
	계	의원역량 개발비	의정운영 공동경비	사 무 관리비	
2021년도	5,890	1,830	1,120	2,940	

-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「거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규칙」 제17조에 따라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원수, 사업 및 활동계획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음.
- 의원 연구단체의 2021년도 연구활동 계획서는 전반적으로 설립 목적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고, 이러한 연구단체의 활동으로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 등에 기여한다면 의정발전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- 『2020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결과 보고서』 (의회사무과-255호(2021.1.19.))를 살펴보면 활동기간이 짧음에도 청년정책의 관심확산, 활성화 방안모색, 지속가능발전 공감대 형성 등 추진방향을 수립하여 예산 2,920천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기반을 정립하였음.
- 연구활동에 따라 제시된 의원들의 의견 등은 조례 제·개정, 예산심사, 군정질문, 5분 자유발언 등 의정자료 등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향후 결과보고서 작성 시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사례 등을 포함함으로써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의정발전을 위한 활동임을 의원 및 군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됨.

□ 의원 연구단체별 검토의견

연구단체명	대표자 (인원)	예산액 (천원)	검토의견
계		5,890	
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회	이홍희 (10명)	2,56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법제도개선,추진동향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함으로써 지속가능성장 사례를 연구하는 단체임. • 연구목표는 ①거창군 포스트코로나시대 거창의 미래계획 ②지방의제21 설정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③ 거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그린뉴딜 대응 방안 마련이며, • 8월 중 전문가 강연(내용 : 포스트코로나시대 그린뉴딜정책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)과 함께 환경단체 의견수렴 및 결과를 도출할 예정임. •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기후·에너지 정책 추진 방향 및 제도 구축 방안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청년정책연구회	권순모 (9명)	3,3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년정책 현안에 대한 현실 인식과 전문가 강연을 통한 토론,피드백을 통해 청년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. • 연구목표는 ① 청년발전 기본조례의 개정안 도출 ②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며, • 11월에 전문가 강연(내용 : 사회혁신에 있어 청년의 역할) 2회와 청년단체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. • 전문가 강연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내실있는 청년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